

서울고등법원

제 18 민사부

판 결

사 건 2004나29080 보험금

원고, 피항소인

1. 김\*\*

2. 전\*\*

3. 강\*\*

4. 전\*\*

5. 전\*\*

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\*\*

원고들 주소 진주시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지

담당변호사 김한솔

피고, 항소인

\*\*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

서울

대표이사 정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

담당변호사 경수근, 백무열

제1심 판결

서울남부지방법원 2004. 3. 11. 선고 2003가합5154 판결

변론종결

2004. 8. 31.

판 결 선 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04. 10. 8.

## 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##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### 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 김\*\*에게 117,369,410원, 원고 전\*\*, 강\*\*에게 각 3,000,000원, 원고 전\*\*에게 1,000,000원, 원고 전\*\*에게 74,912,9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2. 9. 1.부터 2003. 5. 31.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.

### 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## 이 유

### 1.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

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### 2. 결 론

그렇다면,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     판사      김종백      \_\_\_\_\_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판사      이원범      \_\_\_\_\_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판사      성수제      \_\_\_\_\_